##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9382

제안연월일: 2025. 3. .

제 안 자: 여성가족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0300	신성범 의원	2024. 6. 11.	<ul> <li>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2024. 9. 4.)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및 소위회부</li> <li>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3. 5.) 상 정·심사</li> </ul>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2203543	한지아 의원	2024. 9. 2.	<ul> <li>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및 소위회부</li> <li>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3. 5.) 상 정·심사</li> </ul>

나.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3. 5.)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3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3. 6.)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표기 방식에서 '나이'표기방식으로 변경하여 나이 표기 방식의 통일성을 기하고,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취급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또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도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신분증 확인 등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과징금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청소년의 연령 표시를 '만 나이' 표기 방식에서 '나이' 표기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나. 제16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49조의2 신설).

다.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해 위반행위를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54조제3항).

법률 제 호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및 단서 중 "만 19세"를 각각 "19세"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제3항 중 "제4호"를 "제4호, 같은 조 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영업행위에 대한 과징금 면 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행위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u>만 19세</u> 미만	1 <u>19세</u>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u>만 1</u>	<u>1</u> 9세
<u>9세</u> 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9조의2(나이 및 본인 여부 확
	<u>인을 위한 협조) 제16조, 제28</u>
	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나이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
	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4조(과징금) ① • ② (생	제54조(과징금)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	3
조제1호·제3호· <u>제4호</u> 또는	<u>제4호, 같은 조 제</u>
제59조제6호ㆍ제8호에 해당하	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	<u>행위에 한정한다)</u>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	
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	

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 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 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 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 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